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6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1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제2항 제6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(부정합격자 채용취소, 임용 전 확인서류 징구, 예비합격자 운영 관련사항 등)

제4조(제1항 1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필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NCS 직업기초능력을 검정하며 필요에 따라 직무수행능력(전공시험)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

제7조(제1항 4호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과거 제척·기피·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

제9조(제2항)의 “3배수”를 “5배수”로 한다.

[별표 1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<u>직무수행능력</u> <u>(전공평가),</u> <u>실기시험 병행 가능</u>
기능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기술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
업무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대인관계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

[별표 3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 관련)

구 분	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<u>가감점</u> <u>부여</u>
		1차	2차		
<u>일반직</u> <u>기능직</u>	<u>부장</u>	<u>본부장</u>		<u>사장</u>	
	<u>팀장</u>	<u>부장</u>	<u>본부장</u>	<u>사장</u>	
	<u>담당</u>	<u>팀장</u>	<u>부장</u>	<u>본부장</u>	<u>사장</u>

※ 본부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[별표 6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포상자 평정

구 분	훈장 및 포상	표 창				
		대통령	국무총리	도지사 (장관급상당 기관장포함)	시 장	사 장
점 수	<u>5</u>	<u>4</u>	<u>3</u>	<u>2</u>	1.5	<u>1</u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	경영기획부장
	성 명	이 현 동
	담당 성명	이 태 권
	(전화번호)	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신규채용) ① <생략> ② <생략> 1. ~ 5. <생략> 6. <u>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</u>	제3조(신규채용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1. ~ 5. <현행과 같음> 6. <u>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(부정 합격자 채용취소, 임용 전 확인서류 징구, 예비합격자 운영 관련사항 등</u>
③ ~ ⑦ <생략>	③ ~ ⑦ <현행과 같음>
제4조(시험의 방법) ① <생략> 1. <u>필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NCS 직 업기초능력을 검정한다.</u>	제4조(시험의 방법) ① <생략> 1. <u>필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NCS 직 업기초능력을 검정하며 필요에 따라 직무 수행능력(전공시험)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.</u>
2. ~ 3. <생략> ② ~ ④ <생략>	2. ~ 3. <현행과 같음> ② ~ ④ <현행과 같음>
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<생략> 1. ~ 3. <생략> 4. <u><신설></u>	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<현행과 같음> 1. ~ 3. <현행과 같음> 4. <u>과거 제척·기피·회피 관련 규정을 위 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 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</u>
② ~ ⑧ <생략>	② ~ ⑧ <현행과 같음>
제9조(합격자 결정) ① <생략> ②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전 과목 평균과 “별표 2”의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점 순위로 한다.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<u>3배수</u> 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. ③ ~ ⑨ <생략>	제9조(합격자 결정) ① <생략> ② ----- ----- ----- <u>5배수</u> 의 ----- ----- ③ ~ ⑨ <생략>

현 행

[별표 1]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
기능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기술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실기시험 병행할 수 있음
업무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대인관계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

개정안

[별표 1]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<u>직무수행능력</u> <u>(전공평가),</u> <u>실기시험 병행 가능</u>
기능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기술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
업무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대인관계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면접	

현 행

[별표 3]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 관련)

구 분		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부여 (± 5점)
			1차	2차		
일반직 기능직	경영 기획부	3·4급 직원	본부장		사장	
		5급이하 및 기능직	부 장		본부장	사장
	사업 부서	3·4급 직원	본부장		사장	
		5급이하 및 기능직	팀장	부장	본부장	사장

※ 본부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개정안

[별표 3]

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(제25조 관련)

구 분		평정대상자	평 정 자		확 인 자	가감점 (± 5점)
			1차	2차		
<u>일반직</u> <u>기능직</u>		<u>부장</u>	<u>본부장</u>		<u>사장</u>	
		<u>팀장</u>	<u>부장</u>	<u>본부장</u>	<u>사장</u>	
		<u>담당</u>	<u>팀장</u>	<u>부장</u>	<u>본부장</u>	<u>사장</u>

※ 본부장은 사장이 단독으로 평정한다.

현 행

[별표 6]

포상자 평정

구 분	훈장 및 포상	표 창				
		대통령	국무총리	도지사 (장관급상당 기관장포함)	시 장	사장
점 수	4	3	2	1.5	1.5	1.5

개정안

[별표 6]

포상자 평정

구 분	훈장 및 포상	표 창				
		대통령	국무총리	도지사 (장관급상당 기관장포함)	시 장	사 장
점 수	<u>5</u>	<u>4</u>	<u>3</u>	<u>2</u>	1.5	<u>1</u>